#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37

발의연월일: 2021. 1. 21.

발 의 자:정희용·한기호·송언석

이채익 • 김영식 • 권명호

김희곤 · 최춘식 · 김용판

정진석 • 배준영 • 윤재옥

추경호 · 김승수 · 강민국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항목 중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에 대한 전무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의2 및 제43조).

#### 법률 제 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제21조의 제목 중 "개인위치정보 등"을 "개인위치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 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을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을 "개인위치정보등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이용"으로,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을 "해당 개인위치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등을 다른 개인위치정보등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 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을 "개인위치정보등(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등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분리하여 저장·관 리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 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위치정보는 제2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	는 제공) ①
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	
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	
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 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 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2. (생략)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기위 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 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 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 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 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u>개인위치정보등</u> 의 이용·
제공의 제한 등)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
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
<u>등"이라 한다)</u>
1.•2. (현행과 같음)
제23조(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
및 점검) ①
개인위치정보등의 보유기간
<u>이 경과하거나 수집·이용</u>
<u>ন</u> ্টা
<u>당 개인위치정보등을</u>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 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 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 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등 을 다른 개인위치정보등과 분 리하여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u>파기실태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개
റി (	이키거ㅂ드/도이이	이ㅂㄹ	ᅯ

인위지성보능(농의의 일부들 절 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

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 | 다)을------. 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신 설>

9. ~ 14. (생략)

③ ~ ⑧ (생 략)

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 의 개인위치정보등으로 한정한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u>보등을 분리하여</u> 저장 · 관리하지 아니한 자
- 9. ~ 14.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